



6장 WTO의 기본원칙

1절 비차별원칙

▶ 최혜국대우원칙

최혜국대우원칙(Most-Favoured-Nation, MFN, 最惠国待遇原则)은 강대국 간에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가 협상력이 약한 국가나 약소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으로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배경에서 등장

어떠한 국가도 타국에 대하여 무역상의 특혜를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GATT 제1조는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아주 광범위하게 표현한 기준을 확립

▶ 예외

-역사적인 특혜조치

-지역경제통합

-의무면제에 의한 특혜조치

▶ 내국민대우원칙

-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国民待遇)
이란 외국상품이 자국 내로 수입되면 동등한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최혜국대우가 다른 국가들 간에 동등한 대우
를 요구하는 것인 반면, 내국민대우는 일단 관
세를 납부하고 반입절차를 마친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

▶ 예외

- GATT 제20조에서 규정한 일반적 예외는 (1)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금·은의 수입수출에 관한 조치 (4) GATT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등.

▶ 시장접근

- 관세인하
- 관세양허의 재협상
- 최소시장접근 : 농산물협정에서는 특정품목의 전면적인 시장개방(관세화)을 일정시기 이후에 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때까지의 기간에도 최소한(minimum) 어느 정도는 개방하도록 정함.

▶ 투명성

- 회원국은 그들의 무역법규를 공표하고, 무역에 영향을 주는 행정결정의 검토를 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하여야 함.
- 다른 회원국의 정보요청에도 응하여야 하며, 보조금지급에 관한 관행은 WTO에 고지하여야 함.

▶ 공정경쟁